경상국립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운영 지침

[시행 2022.2.28] [경상국립대학교학교지침 제135호, 2022.2.28, 일부개정]

경상국립대학교 교무처(학사지원과) 055-772-0132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「경상국립대학교 학칙」제85조제3항에 따라 졸업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증분야) ① 졸업자격인증제(이하 "인증제"라 한다)는 필수인증과 선택인증으로 구분한다. 필수인증에는"영어인증제"와 "「꿈·미래개척」상담인증제"를 두고, 선택인증에는 "개척인증제"로서 사회봉사, 글로벌리더십, 독서, 인성, 진로탐색 분야를 둔다.

② 학생은 필수인증 이외에 개척인증의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을 인증 받아야 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인증제는 2009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(2011학년도 편입생 포함)부터 적용한다. 다만, 학칙 제85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은 제외한다. <개정 2022.2.28.>

제4조(졸업자격인증위원회) 인증제의 분야 및 기준의 심의를 위해 졸업자격인증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도서관장, 국제어학원장, 교무부처장, 학생부처장, 교육혁신부처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2.28.>

③ 임명직 위원은 교육혁신처장, 도서관장, 국제어학원장, 학생부처장이 관련 전임교원 중 각 1명씩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인증분야별 기준의 책정 및 변경
2. 그 밖에 인증제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

제7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총괄부서 및 주관부서) ① 인증제의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를 둔다. 총괄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과로 하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어: 교무처(학사지원과)
2. 「꿈·미래개척」상담: 교무처(학사지원과)
3. 사회봉사: 학생처(학생과)
4. 글로벌리더십: 학생처(학생과)
5. 독서: 도서관
6. 인성: 교육혁신처(교육과정지원실) <개정 2022.2.28.>
7. 진로탐색: 인재개발원

② 주관부서는 매 학년도 인증 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한 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, 총괄부서에서는 이를 공고한다.

제9조(인증기준) 인증제의 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10조(인증제의 신청 및 변경) ① 학생은 인증분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선택한다. 다만, 필수인증제는 수강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2.2.28.>

② 개척인증제는 3학년(5개 학기) 수강신청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수의예과 · 수의학과, 약학대학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개척인증제 선택분야의 변경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확정일까지 가능하다.

④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확정일까지 인증제를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인증제 결과처리) ① 주관부서에서는 매 학기말 학생의 인증여부를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 <개정 2022.2.28.>

② 총괄부서에서는 개척인증제를 이수한 경우 이를 학적부에 등재한다.

제12조(그 밖의 사항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<제135호,2022.2.28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영어」필수인증제 교과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별표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②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별표 개정에 따라 영어인증제 중 '대학영어1'은 '글로벌영어'과목으로, '대학영어2'는 '멀티미디어영어스피킹'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제3조(「인성」선택(개척)인증제 중 교과목 이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① 별표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②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지침에 따라 「GNU인성」교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.